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. 9. 20 선고 2017가단75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8. 30.

판결 선고 2017. 9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대 22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ㄴ) 부분 9㎡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테이트지붕 단층주택을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.

판사강성우

별지